

무역학석사 학위논문

자유무역지역의 관세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연구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Managing Free Trade Zone

지도교수 유 일 선

2020年 8月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국제관세학과
박 서 연

본 논문을 박서연의 무역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위원장 정 홍 열 (印)

위원 임 재 옥 (印)

위원 유 일 선 (印)

2020年 8月 7日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목차

국문초록

| | |
|--------------------------|----|
| 제1장 서 론 | 1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 2 |
| 제3절 선행연구분석 | 3 |
| | |
| 제2장 이론적 배경 | 9 |
| 제1절 자유무역이론 | 9 |
| 제2절 보호무역이론 | 13 |
| 1. 관세의 경제적 효과 | 13 |
| 2. 쿼터의 경제적 효과 | 16 |
| | |
|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특성과 현황 | 18 |
| 제1절 자유무역지역의 특성 | 18 |
| 1. 자유무역지역의 정의 | 18 |
| 2. 자유무역지역제도의 특징 | 20 |
| 3. 자유무역지역과 유사 제도 | 22 |
| 4. 자유무역지역의 화물관리 | 27 |
| 5. 보세구역의 화물관리 | 32 |
| 제2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현황 | 40 |
| 1. 자유무역지역 지정절차 | 40 |
| 2. 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 | 41 |
| 3.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 | 43 |
| | |
| 제4장 자유무역지역의 개선방안 | 44 |
| 제1절 자유무역지역의 문제점 | 44 |

| | |
|------------------------------------|----|
| 1. 자유무역지역의 복합물류업의 한계 | 44 |
| 2. 업종코드변경시 심사 절차 복잡 | 46 |
| 3. 관세법과 비교시 과중한 처벌규정 | 49 |
| 4. 최신 자유무역지역 업무지침서 부재 | 49 |
| 제4절 자유무역지역의 개선방안 | 50 |
| 1. 자유무역지역법 복합물류사업 범위를 폭넓게 해석 | 50 |
| 2. 업종코드 변경시 심사 절차 완화 | 50 |
| 3. 자유무역지역법의 벌칙규정을 관세법으로 일원화 | 51 |
| 4. 자유무역지역 신가이드 북 제작 | 51 |
| 제5장 결론 | 53 |
| 참고문헌 | 55 |

표목차

| | |
|--|----|
| <표 1-1> 선행연구 요약정리 | 6 |
| <표 3-1>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공항만 자유무역지역의 비교 | 19 |
| <표 3-2>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비교 | 23 |
| <표 3-3> 자유무역지역과 종합보세구역의 비교 | 25 |
| <표 3-4> 자유무역지역 중 장치기간 적용 구역 | 31 |
| <표 3-5> 보세구역의 종류 | 33 |
| <표 3-6> 보세구역의 장치기간 | 36 |
| <표 3-7> 특허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비교 | 38 |
| <표 3-8> 기본계획 작성시 포함해야 할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 40 |
| <표 3-9> 자유무역지역의 지역적 요건 | 42 |
| <표 3-10>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 43 |
| <표 4-1>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업종별 고유부호 | 48 |

그림목차

| | |
|---|----|
| <그림 2-1> 수입의 경제적 효과 | 12 |
| <그림 2-2> 관세의 경제적 효과 | 14 |
| <그림 3-1> 내국물품 반입절차 흐름도 | 28 |
| <그림 4-1>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사용소비신고 업무절차흐름도 | 30 |
| <그림 4-2> 관리부호 부여 요령 | 45 |

국문초록

자유무역지역의 관세행정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박 서 연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국제관세학과

본 연구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특히 부산항의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관세행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호무역이론과 자유무역이론을 검토하여 자유무역지역 도입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한제도 즉 경제자유구역, 종합보세구역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특히보세구역과는 화물관리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자유무역 지역 지정절차, 지정요건, 지정현황을 통해 현재 자유무역지역의 운영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지역의 관세행정상의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자유무역지역법상 복합물류사업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둘째, 업종코드 변경시 심사절차 완화, 셋째, 자유무역지역법의 별칙규정을 관세법으로 일원화, 넷째, 최신화 된 자유무역지역 가이드 북을 제작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Managing Free Trade Zone

Park, Seo Yun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ustoms
Graduate School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oblems currently faced by the customs administration in the free trade zone, particularly the free trade zone of Busan Port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This thesis examin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free trade zone by analyzing the theory of protected trade and free trade. In addition, a system similar to that of the free trade zone, the Free Economic Zone, and the Comprehensive Bonded Zone,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terms of institutions. This thesis also compared it with the patent bonded area and analyzed it in terms of cargo management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ree trade zone.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ons in the free trade zone through the procedures, requirements, and status of the free trade zone designation. Based on this analysis, several problems

were discovered in regard to the customs administration in the free trade zone.

The following ideas were suggested as an improvement plan for these problems. First, a broad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the complex logistics business was propos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free trade zone. Second, when the industry code is changed , it was suggested that the improvement policy to ease the screening process. Third, The penal provisions of the Free Trade Zone Act sould be merged with the Customs Act. Finally, This thesis suggested that a updated Free Trad Zone guide book should be produced.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1960년대부터 수출촉진 경제성장 정책(Export Promotion Economic Growth Policy: EP Policy)을 추진해왔다. 그 당시 세계경제는 GATT주도하의 제6차 국제무역협상인 캐네디라운드가 정립됨으로써 세계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질서가 정착되어가고 있었다. 당시 개도국은 GATT 유예조항(waiver clause)을 통해 수입제한을 할 수 있고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를 통해 수출하기에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한국전쟁을 통해 일부 있는 자본재마저도 파괴되고 단순 노동력만이 과잉 상태인 가난한 국가에서 수출은 쉽지 않았다. 한국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투자와 기술유치가 절실히 필요했다. 이때 도입된 것이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제도이다. 즉 일정 지역에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적용을 유예하여 자유로운 제조, 물류와 무역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와 기술을 유치하는 것이다.¹⁾ 이 제도 하에서 유치된 외국자본과 기술을 단순노동과 결합한 가공무역을 통해 고용과 수출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이런 목적의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전북 익산시와 경남 마산시에 수출자유지역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2002년 자유무역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2002년 부산항과 광양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물류촉진, 중계위탁무역의 촉진, 물류부가가치 창출,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국제적인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2004년 3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무역 증진, 국제물류의 원활화와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재까지 자

1) 장근호(2014), p. 181

유무역지역으로 통합·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3월말 현재 자유무역지역은 입지조건 및 관리권자에 따라 산업단지형 7개, 항만형 5개, 공항형 1개 등 13개 지역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지역 성격의 제도가 850여개 지역에서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 대부분이 가공·조립기능을 보유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유치 및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2020년 현재 유형별로 13개 자유무역지역으로 외형적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증진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지역 수출비중은 2004년 1.79%에서 2017년 0.84%로 하락하고 그 수준도 미미하다. 반면 관세법상의 특허보세구역인 보세공장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28%로 자유무역지역보다 수출 및 가공무역 진흥에 기여도가 더 높다.²⁾ 또한 각종 불법과 부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세관의 화물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³⁾

여기서는 자유무역지역의 관세행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부산항에 지정되어 있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관세행정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설치와 관련이 있는 무역이론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한 제도인 경제자유구역, 종합보세구역과 비교분석한다. 또한 보세구역과의 비교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의 화물관리와 현재 운영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지정절차 및 지정현황들을 살펴볼 것이다.

제2절 연구 방법과 구성

본 연구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실무적인 화물관리절차를 고찰하고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의 효율

2) 윤상렬(2017), p.1

3) 대표적인 사례로 2016년에 발생한 것을 보면 고세율의 농산물 밀수입(평택항), 프랑스산 펠릿 수입신고전 무단반출(광양항), 외국담배 국내밀수입 행위(부산항) 등 불법행위들이다.

적 화물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문헌조사 방법 형태의 연구를 시행한다. 자유무역지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국내 학위 및 학술 연구 논문과 단행본 등 문헌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관세법, 관세청 고시 등 법 관련 자료와 관세청에서 작성된 내부자료를 참고하였다. 자유무역지역의 화물관리와 관련하여 부산항, 인천공항, 인천항, 마산항 등에서 화물관리업무에 관한 보고서 등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선행연구의 분석 그리고 연구의 방법 및 구성으로 되어 있다.

제2장은 자유무역이론과 보호무역이론을 통해서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도입배경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제3장은 자유무역지역 현황과 화물관리 제도를 이해함과 동시에, 국내의 유사제도인 관세자유지역, 경제자유구역, 관세법상 보세구역과의 차이점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자유무역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지정현황을 검토하여 현재 자유무역지역의 운영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4장은 본 연구의 핵심으로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지역의 관세행정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효율적 화물관리와 신물류처리절차 개선을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관세행정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요약과 결론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3절 선행연구의 분석

2004년 3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이 통합·운영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이후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이기웅·곽현(2006)⁴⁾은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을 통한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라는 점에서 의의를 평가할 수 있지만 입주기업의 역외가공 자율관리 부여,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기업간 입주인센티브 균등화, 입주자격의 Negative방식 전환 등 자유무역지역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동룡·신용준(2010)⁵⁾은 세계무역질서가 다자주의에서 FTA 확대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마산 자유무역지역(MFTZ)의 당면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위해 SWOT분석을 통해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제기된 약점을 개선하면 FTA확대가 위협요인 보다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2)⁶⁾은 자유무역지역에 한정하여 역내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외국인 투자, 고용, 수출 및 산업적 특성 등의 경제 기여도에 따라 지원 내용을 차별화 할 것을 주장했으며, 자유무역지역의 부분적 개편방안으로는 국내업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한적이고 단계적인 원료관세 선택권 부여와 함께 주기적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 원료관세와 함께 자유무역지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면세, 역외 작업에만 적용되는 주기적 신고를 일정한 전제조건 아래 차등적으로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장근호(2014)⁷⁾는 자유무역지역은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므로 예산사업에 준용하여 전반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체제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설립허가 당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반입물품, 제조공정, 입주업체 등을 제한하고 또한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정밀한 심사를 통하여 입주를 허가를 해야 한다. 화물보안체계나 재고장부 체계 등 자율적 관리에 필요한 전제조건 구비 여부를 세관이 확인한 다음, 작업 개

4) 이기웅·곽현(2006), pp.179-181

5) 김동룡·신용준(2010), pp.275-299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pp.159-172

7) 장근호 (2014), pp.149-182

시를 승인하고 그 이후 화물 반출입 업무를 할 때 세관 허가를 원칙으로 하되 각종 내국세 및 관세감면 이외 주기적 혹은 포괄적 작업신고를 허용해야 한다. 필요하면 운영인(보세사)이 일상 업무를 관리하고, 세관은 운영인을 통하여 간접관리를 하지만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벌과금 이외 각종 작업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운영인은 재고장부 체계가 사후심사에 필요한 물품 추적이 가능하도록 구비해야 한다. 세관의 사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심사방식이나 심사기간을 세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5)⁸⁾은 「관세법」과 「자유무역지역법」의 이원화된 법령체계 하에서 자유무역지역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입주기업의 의견조사를 통한 자유무역지역 관련 관세행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윤법(2016)⁹⁾은 외국물품의 화물관리에 대해 자유무역지역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화물관리감독 절차를 통하여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법상 보세공장의 제조품에 대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물류비용을 줄이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국물품 등이 원상태로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경우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에서 원상태 물품 반입절차와 동일하게 과세당국이 해석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게 물류비용을 줄이면서 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맹철규·남금천·김진섭(2018)¹⁰⁾은 관세법과 자유무역법의 이원화 된 법령체계의 단일화, 기업중심의 운영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대외무역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세법의 소관부처의 협업을 주장했다.

조지성 외 4인(2019)¹¹⁾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통관시스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당국의 농·축산물 가공 품목의 손모율 표준화 연구 적극 장려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한 지원 기금 마련, 해양수산부의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 반출입 관리시스템 개선, 관세당국과 해양

8)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5), pp.103-106

9) 경윤법(2016), p.151

10) 맹철규·남근천·김진섭(2018), pp.165-166

11) 조지성 등(2019), pp.131-136

수산부,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의 자유무역 지역 활성화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 추진 등을 주장했다.

이윤·장광홍·안영효(2020)¹²⁾은 수출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성이 낮은 자유무역지역들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들에 대한 수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지역 상호 간의 정보와 인력의 교류를 촉진, 혁신사례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지금까지 연구는 자유무역지역이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업경영적 측면, 국제물류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관세행정측면에서 자유무역지역을 연구하고자 한다.

<표 1-1> 선행연구분석

| 연구자 (연구연도) | 연구목적 | 주요 연구결과 |
|---------------------------|---|---|
| 이기웅 · 곽현 (2006) |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입주기업의 역외가공 자율관리 부여,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 입주인센티브 균등화, 입주자격의 Negative방식 전환 등 자유무역지역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
| 김동룡 · 신용준 (2010) | FTA확대에 따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및 물품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위해 SWOT분석을 통해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제기된 약점을 개선 |
|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2012) | 자유무역지역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FTZ) | 경제 기여도에 따라 지원 내용 차별화, 원료관세 선택권 부여와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 원료관세와 함께 자유무역지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면세, 역외작업에만 적용되는 주기적 신고 차등적으로 혜택 |

12) 이윤·장광홍·안영효(2020), p.20

| | | |
|-----------------------------|--|--|
| 장근호 (2014) | 자유무역지역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조세감면 혜택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 정밀한 심사를 통하여 입주를 허가, 자율적 관리에 필요한 전제조건 구비 여부를 세관이 확인. 화물 반출입과 작업에서 세관 허가를 원칙으로 하는 등 세관의 통제적인 역할 강조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세행정전략 연구 | 자유무역지역에서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할 것과 관리권자에게 통제시설관리에 대한 재량 부여, 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법 중 화물관리에 대한 규정은 관세법으로 일원화 할 것을 제시 |
| 경윤범 (2016) |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국내반입시 관세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법상 보세공장의 제조품에 대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물류비용을 줄이고 기업경쟁력을 제고, 외국물품 등이 원상태로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경우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에서 원상태 물품 반입절차와 동일하게 과세당국이 해석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기업들이 예측가능하게 물류비용을 줄이면서 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 맹철규 남금천 김진섭 (2018) | 관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유무역지역(FTZ)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세법과 자유무역법의 이원화 된 법령체계의 단일화, 기업중심의 운영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대외무역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세법의 소관부처의 협업 |
| 조지성 김은수 이언경 김동환 |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 개선을 통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FTZ) 활성화 방안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통관시스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당국의 농·축산물 가공 품목의 손모을 표준화 연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한 지원 기 |

| | | |
|----------------------------|-------------------------|---|
| 김엄지 (2019) | | 금 마련, 해양수산부의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 반출입 관리시스템 개선, 이해관계 기관의 자유무역 지역 활성화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 추진 |
| 이윤 장광홍 안영효 (2020) | 한국 자유무역지역의 운 영효율성 분석 |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들에 대한 수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지역 상호 간의 정보와 인력의 교류를 촉진, 혁신사례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활성화 |

제2장 이론적 배경

세계 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질서는 미국의 주도로 자유무역주의가 유지되었다. 1930년대 대공황 극복과정에서 관세전쟁 등 극단적인 보호무역정책이 결국 세계대전을 유발했다고 각국들은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경제협력 없이 세계경제가 침체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전후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런 자유무역주의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체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¹³⁾

그러나 산업자본, 요소부존과 기술이 부족하고 과잉노동이 존재하는 개도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런 자유무역주의 하에서 개도국은 농업과 광업중심의 전통산업의 제품에 특화되고 비교우위가 낮지만 고부가가치인 제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개도국은 이른바 유치산업(infant industry)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한다.¹⁴⁾ 이런 개도국들의 주장이 일부 반영되어 국제사회는 세계은행을 설립하여 자본의 대부기능을 확대하고 선진국들은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통해 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하였다. 또한 개도국 유치산업이 수입품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게 되면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예조항을 추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유통하여 노동과 결합하여 재화를 생산하고 수출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특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13)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국제조직이 필요하다. 전후 자유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해 처음 재화의 자유무역을 관장하기 위해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를 설립하려 했으나 미국의회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그래서 국제조약이 아닌 잠정적인 정부 간 협약 형태의 GATT체제가 형성되었다. 결국 GATT체제는 국제기구인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로 정착되었다. 또한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결제수단으로서 국제통화 문제를 관장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를 설립하였다. 또한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은행을 설립하여 자본 대부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3가지 국제기구를 전후 자유무역질서를 이끈 삼두마차라고 한다. 김신행·김태기(2020), p.334.

14) 이것을 유치산업보호론이라고 하는데 19세기 독일의 경제학자 리스트가 주장하였다.

경제이론 바탕으로 설명한다.

제1절 자유무역이론

일반적으로 무역을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 물음에 답해야 한다. 즉 무역은 왜 발생하는가, 어떤 재화가 수출되고 수입되는가, 즉 무역패턴은 무엇인가, 무역이익은 어떻게 배분되는가를 설명한다.

자유무역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비교우위론이다. 양국이 비교우위 (comparative advantage)가 있는 재화를 수출하고 비교열위가 있는 재화를 수입하면 양국에서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다. 비교우위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에 따라 리카아도(D. Ricardo) 비교우위론과 헥셔-올린이론 (Heckscher-Ohlin theory)으로 구분할 수 있다.

리카아도 비교우위론은 각국의 생산기술의 차이로 발생한, 생산비가 싼 절대우위 개념으로 무역패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기술의 차이에 의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차이에 의해서 비교우위가 존재하므로 무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개도국의 모든 상품이 선진국에 비해 생산비용이 높다고 하더라도 기회비용이 적은 상품은 반드시 존재하므로 그 상품에 특화(specialization)하여 생산하여 수출하고 기회비용이 높은 상품을 수입하면 양국에서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헥셔-올린이론은 비교우위의 결정을 각국의 요소부존의 차이에서 찾았다. 즉 자본풍부국은 상대적으로 자본가격(임대료)이 낮아 자본집약재의 상대가격이 낮으므로 비교우위가 있어 수출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노동집약재를 수입하면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재를 수출하고 자본집약재를 수입한다.

무역전에는 자본풍부국에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자본집약재의 상대가격이 낮을 것이다. 반면 노동풍부국은 자본집약재의 상대가격이 자본풍부국보다 더 높다(노동풍부국은 노동가격(임금)이 낮으므로 노동집약재의 상대가격이 자본풍부국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 국제가격은

자본풍부국의 자본집약재 상대가격과 노동풍부국의 자본집약재 상대가격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면 자본풍부국에서는 자본집약재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게 되므로 자본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임금은 하락하고 임대료는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노동풍부국에서는 임금은 상승하고 임대료는 하락하게 된다. 즉 무역을 하면 그 국가의 풍부한 요소자원을 가지고 있는 계층은 이익을 보고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계층은 손해를 본다.¹⁵⁾

이것을 한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2-1>에서 보듯이 무역을 하지 않을 때 균형점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이고 이때 무역전 균형가격 P_d 와 균형생산량 Q_d 가 결정된다. 이럴 때 소비자가 얻는 이익, 즉 소비자잉여는 A이고 기업이 얻는 이익, 즉 생산자잉여는 B+C가 된다. 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합한 것을 사회후생 (social welfare)라고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현상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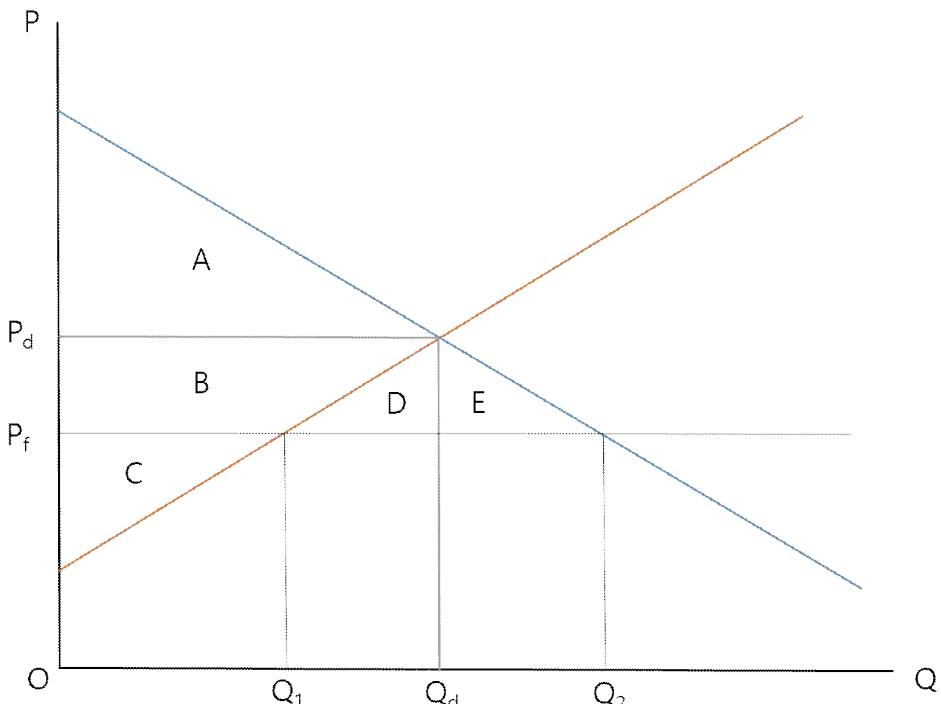
앞의 사회후생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면 무역 전의 사회후생 크기는 A+B+C이다. 이제 무역을 시작하면 이때 국제가격은 P_f 라 하자. 국내가격(P_d)이 국제가격(P_f)보다 낮기 때문에 이 상품은 비교우위가 없는 상품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국내기업의 생산량은 Q_1 으로 감소하고 소비자의 수요는 Q_2 로 늘어나기 때문에 $Q_1 Q_2$ 만큼 세계시장에서 이 상품을 수입할 것이다.

이때 소비가 Q_2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잉여는 A+B+D+E로 확대되고 생산자 잉여는 C로 축소된다. 전체 사회후생은 A+B+C+D+E가 된다. 이것을 무역전의 사회후생과 비교하면 D+E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수입했을 때 얻는 무역이익이다.¹⁶⁾ 그런데 소비자잉여는 무역전과 비교하면 B+D+E만큼 더 늘어나고 생산자잉여는 B만큼 감소하게 된다. 자유무역을 하면 국가 전체적인 사회후생은 증가하지만 비교우위가 없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생산자잉여가 감소하여 손해를 얻게 된다. 그래서 정부가 소비자

15) 이것을 스톨퍼-사무엘슨 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라 한다.

16) 수출의 경우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은 경우이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체 사회후생은 증가한다.

들이 얻은 이익 중에서 B만큼을 기업들에 보상해주지 않는 한 이런 기업들은 자유무역정책을 반대하게 된다.¹⁷⁾ 농산물이나 내수중심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시장개방논의가 나올 때마다 격렬한 시위는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래서 통상관련문제는 국내 경제주체들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문제로 귀결된다.



<그림2-1> 수입의 경제적 효과

결론적으로 자유무역은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을 가져오지만 수입한 경우 기업이 손해를 보고 수출한 경우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보호무역이론

17) 이런 정책을 사무엘슨은 보상원칙(compensation principle)이라 하였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보상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유무역을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은 될지 몰라도 기업들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요청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성립된 정부라면 기업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할 것이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이 관세이며 때에 따라 쿼타제도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을 보호무역주의라 하는데 자국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 까지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할 목적으로 무역을 통제, 특히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이런 보호주의 역사는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세기 애덤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자유방임주의가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영국은 국가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주장하였다. 반면 당시 후진국이었던 독일과 미국은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보호무역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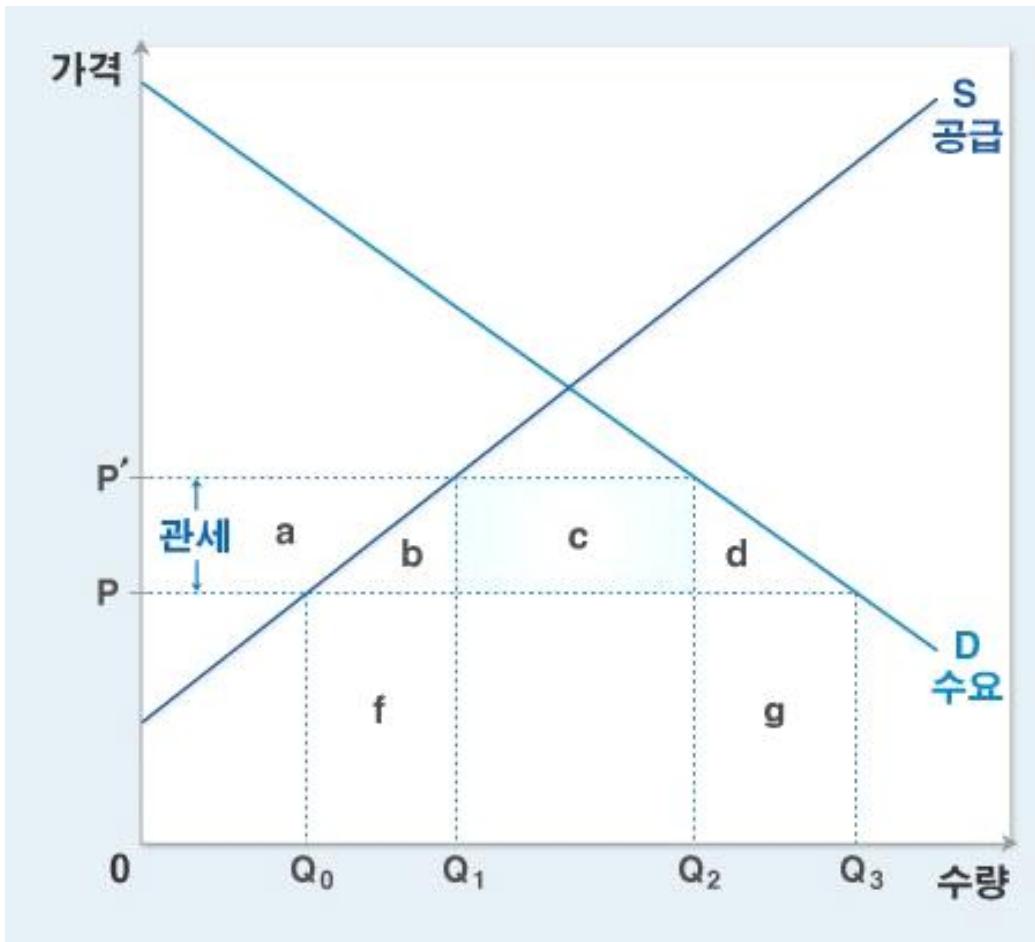
보호무역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유치산업보호론이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독일의 리스트(F. List)가 있다. 리스트는 경제발전의 단계를 제1단계 농업, 제2단계 개선된 농업, 상업의 증가, 공업의 발흥, 유치산업의 발생, 제3단계 공업의 발달 등으로 나누었다. 제1단계에 있는 나라는 공업품을 선진국에서 싸게 수입하는 한편 과잉 농산물을 수출하므로 제3단계와 같이 자유무역이 유리하다. 그러나 제2단계에 있는 나라는 국내에 유치(幼稚)한 공업이 부흥하고 있어 이 유치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보호무역정책의 중요한 수단인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중 쿼타에 대해서 살펴본다.

1. 관세의 경제적 효과

관세란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품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에 의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는 보호무역의 한 수단으로서 국내산업의 보호육성정책에 따라 수입품에 부과된다.

관세의 효과는 소비효과, 보호효과, 수입효과, 국제수지효과, 고용의 효과 등

이 있는데 그림으로 설명해보도록 한다.



<그림2-2> 관세의 경제적 효과

관세는 주로 수입품에 부과되며¹⁸⁾ 그 효과를 살펴보면 소국¹⁹⁾의 경우 부과된 관세만큼 국내 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림2-2>에서 S는 공급곡선 D는 수요곡선을 나타낸다. 여기서 P는 관세가 부과되기 전 국제가격이고, P'는 관세부과 후 관세만큼 상승한 국내가격을 나타낸다. 이 경우 상품거

18)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수출관세라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수출에, 캐나다는 천연가스에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19) 어떤 나라의 무역이 세계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 그 나라의 무역량 변화가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할 만큼 적은 나라를 말한다. 반대로 대국은 그 나라의 무역량 변화가 국제가격에 영향을 줄만큼 큰 나라를 말한다.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상 소국가정을 택하였다.

래는 국내가격 P' 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국내기업의 생산은 Q_0 에서 Q_1 으로 증가하고 소비는 Q_3 에서 Q_2 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수입은 Q_0Q_3 에서 Q_1Q_2 로 감소하게 된다. 이것을 부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소비효과는 관세로 인한 가격인상 때문에 소비량이 Q_3 에서 Q_2 로 줄어든 것을 말한다. 보호효과는 국내가격의 상승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있던 기업들이 생산에 참여하여 국내생산량이 Q_0 에서 Q_1 으로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고용효과로 이어진다. 수입감소분이 국내생산량으로 어느 정도 보충되므로 국내고용 창출되고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관세수입효과는 관세 부과에 발생한 관세수입으로 국가 재정수입이 증가하는 효과이다. 여기서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 차인 관세와 감소된 수입량의 곱만큼, 즉 <그림2-2>에서 c 만큼 관세수입이 발생한다. 국제수지효과는 관세의 부과에 의한 수입의 감소가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이다. 즉 수입량의 감소분 $Q_2Q_3 + Q_0Q_1$ 에다 국제가격 P 곱만큼 국제수지적자가 감소한다. 여기서는 <그림2-2>에서 $f+g$ 영역으로 나타난다.

이제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후생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가격 P'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소비자 잉여는 $a+b+c+d$ 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중 a 는 생산자잉여로 기업에게 돌아가고 c 는 관세수입형태로 정부에게 돌아간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국제시장가격인 P 에서 이루어지며 이때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인 상태이다. 그러나 관세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을 하게 함으로써 가격보다 생산비용이 더 높은 비효율적인 기업이 생산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비효율성에 의해 사라지는, 즉 생산왜곡에 의한 자중손실 (dead weight loss)은 b 에 해당한다. 또한 관세로 인한 인위적인 가격상승으로 인해 소비감소에 따라 사라지는, 즉 소비왜곡에 의한 자중손실은 d 에 해당한다. 관세부과는 사회후생적 측면에서 회복할 수 없는 기업의 보호효과는 존재하지만 생산과 소비의 왜곡에 따른 자중손실을 사회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기업이 보호효과를 통해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정부가 관세수입을 사회인프라에 투자하여 얻은 장기적 이익이 관세부과로 발생한 경

제순손실보다 크지 않으면 관세정책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2. 쿼터의 경제적 효과

보호무역주의 중요수단으로 관세와 비견되는 쿼터 제도가 있다. 쿼터제도는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 상품에 대해 미리 그 수입 총량과 각국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량을 결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이다.²⁰⁾ 양적 규제를 하기 때문에 가격규제를 하는 관세와 비교하면 그 효과가 더 직접적이고 훨씬 빠르다. 관세 이외의 여러 보호수단이 있는데 그것을 비관세장벽이라고 하고 쿼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도이다.

<그림2-2>에서 정부가 쿼타를 $Q_1 Q_2$ 만큼만 설정한다면 이 상품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 때 가격상승분이 관세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자. 그러면 관세의 경제효과에서 본 것처럼 <그림2-2>에서 소비효과, 보호효과, 수입효과, 국제수지효과, 고용의 효과 등에서 거의 유사하다. 사회후생 측면에서 동일한 결론이 유도된다.

그런데 소비자 잉여 c 가 어느 경제주체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차이점이 발생한다. 관세는 이 부분이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귀속되지만 쿼터의 경우 수입업자에게 귀속된다. 일반적으로 쿼터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정부는 수입면허증을 교부받은 수입업자들만 쿼터량만큼 수입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한 c 와 같은 이익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익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공급을 제한하여 가격상승을 통해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쿼터지대라고 한다. 쿼터제도는 쿼터지대를 발생하기 때문에 수입면허증 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공무원에게 수입업자들은 뇌물로 수입면허증을 구매하려는 유인을 제공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면허증을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경매를 통해 결정하면 쿼터지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정수입으로 환수할 수 있다. 또한 국제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관세의

20) 한국무역협회, 무역용어사전

경우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되지만 퀘타의 경우 퀘터량이 변하지 않는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차이점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시장이론과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인 사회후생 개념을 가지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자유무역의 경우 국가 전체적인 사회후생은 증가되더라도 경제주체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비교우위는 없지만 미래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치 산업이 자유무역으로 도태될 수도 있어 미래의 경제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 반면 효율성 측면에서 도태되어야 할 기업이 정부의 과도한 보호정책으로 그 비효율성이 유지된다면 보호정책에 따른 자중손실분의 경제순손실과 기업의 비효율성이 가중되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성장 가능성은 암울해진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는 비교우위가 없지만 미래의 성장가능성이 있거나 경쟁력은 없지만 내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장벽을 통해 수입을 억제한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중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자중손실은 비효율적인 기업이 존속하고 외부의 자본과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 잃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이런 자중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특정지역을 분리하여 자유무역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자유무역지역과 같은 특정지역이 설정된다. 이 지역을 통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자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결합하여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중국이 70년대 말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중국을 전면적으로 개방하지 않고 중국의 변두리 지역인 광둥성 주변의 4개 도시에 경제특구(주하이, 선전, 산터우, 샤먼)를 설치하여 경제성장에 성공한 것은 이런 논의의 주요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특성과 현황

제1절 자유무역지역의 특성

1. 자유무역지역의 정의

세계 각국은 생산자본의 확충, 고용 창출, 신기술의 도입과 조세수입의 증대를 위해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특히 기술력, 산업자본과 부존자원이 부족한 개도국은 차관보다는 상환부담이 없는 자본과 기술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투자 유치 목적의 한 방법이 자유무역지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²¹⁾ 제2조에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²²⁾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21) 자유무역지역법은 7장 1보칙 7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물품의 반입 반출과 관리,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 보칙과 별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2) 제4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그 시·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요청된 지역의 설정과 지정의 필요성 및 제5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투자 유치를 통한 무역의 진흥, 고용창출, 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궁극적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자유무역지역제도는 1970년 1월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고용증대 및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수출자유지역”제도를 도입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2002년 1월에는 국제물류업체와 수출업체 등에 관세부과 유예 및 통관절차 간소화로 공항만 및 배후지에 자유로운 물류업 보장을 목적으로 “관세자유지역”제도를 추가로 도입, 시행하다가 2004.6.23부터 “자유무역지역”제도로 통합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²³⁾

<표 3-1>에 보듯이 자유무역지역은 크게 산업단지형, 공항 및 항만형으로 구분된다. 산업단지형은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수출증대와 고용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마산, 군산 등 7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리권자이다. 반면 공항 및 항만형은 무역 및 물류활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공항 및 항만의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지정되고 있다. 현재 항만형은 부산항 등 5개 지역, 공항형은 인천국제공항 1개가 지정되어 있다. 항만형은 해수부장관이, 공항형은 국토부장관이 관리권자이다.

<표 3-1>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공항만 자유무역지역의 비교

| 구분 |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 공항 및 항만 자유무역지역 |
|------|----------------------------------|---|
| 목적 |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수출 증대, 고용창출 | 무역 및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항 및 항만의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지정 |
| 지정지역 |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인천국제공항 |
| 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공항: 국토교통부 장관 항만: 해양수산부장관 |

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3) 경윤범(2016), p.136

2. 자유무역지역제도의 특징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 적용을 유예함으로써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해주는 특정지역이다. 이런 지역 내에서 기업활동은 관세, 규제, 세금 등에서 특혜를 받기 때문에 타 지역과 분리하여 엄격하게 관리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중심의 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면 오히려 물류 및 거래비용이 높아 기업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지만 기본적인 특징은 무역에 관한 관세, 수량제한, 행정적 규제 등을 완화하는데 있다. 그 목적은 해당국가의 보호 장벽을 낮추어 상호 무역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기업들은 자유무역지역의 이점을 잘 활용하려고 한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법인세 등 조세감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입주기업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물품의 반입이 가능하다. 이때 쿼터제 한이나 보세규제(bonding regulation)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쿼터 이상을 저장시켜 놓았다가 쿼터를 활용할 수 있을 때마다 곧바로 반출 가능하다. 둘째, 자유무역지역 이용기업은 물품이 지역 내에 머물러 있거나 해외로 수출될 경우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금흐름의 개선이 가능하다. 셋째, 지역 내 반입물품은 세관당국의 감시를 받기는 하지만 반입한 기업이 자기 물품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가진다. 즉 보세창고 보관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권리 양도도 가능하다. 넷째, 자유무역지역 내의 일정 공간을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특히 국내에 진출했지만 독자적인 판매시설을 갖고 있지 못한 외국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다섯째, 도입한 상품을 실제 판매할 때까지는 송장 작성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늦출 수 있다. 이것은 소득신고를 보다 유리한 납세연도까지 늦출 수 있어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²⁴⁾

자유무역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조세 및 관세 면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립·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하지만 그 외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외국물품이 지역 내에 머물러 있거나 해외로 수출될 경우에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연하게 자금을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처럼 부분품에 대한 관세가 완제품에 대한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구조 하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서 부분품을 관세유예 상태로 수입하여 가공, 조립하여 완제품을 미국 시장에 반출 가능하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입주기업체가 사용 또는 소비할 목적으로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한다.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기업체의 공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 등의 유지·보수와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유무역지역은 다른 지역과 분리하여 관세 및 조세 면제 또는 환급, 교통유발금 면제, 입주기업의 기술개발활동 지원과 행정규제 완화

24) 산업연구원(2007), p.6-7.

등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동인을 제공한다. 불법 행위의 유형을 보면 고세율의 농산물을 밀수입하는 행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 전 무단 반출하는 행위, 외국담배 등을 국내로 밀수입하는 행위 등이다.

3. 자유무역지역과 유사 제도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와 선진 기술을 유치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경제자유구역과 종합보세구역이 있다. 이 절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을 이것과 비교분석한다.

(1)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한다. 이것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의미한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충북, 동해안 권 등 8개가 조성·운영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은 같지만 지정위치와 관리권자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경제자유구역은 별도의 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유무역지역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특화되어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은 기업의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 및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지역제도와 경제자유구역의 상세한 내용은 <표 3-2>에 정리되어 있다.

<표 3-2>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비교

| 구분 | 자유무역지역 | | 경제자유구역 |
|----------|---|---|---|
| | 산업단지형 | 공항, 항만 물류형 | |
| 법적 근거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지정 목적 | ▶ 외국인투자유치, 무역 진흥, 지역균형발전 | ▶ 외국인투자유치, 국제물류기지 육성 | ▶ 외국인투자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
| 지정 위치 | ▶ 항만, 공항의 주변 지역, 산업단지 | ▶ 항만, 공항, 유통 단지, 화물터미널 등 | ▶ 국제 공·항만 주변지역·내륙지역 |
| 지역 특성 | ▶ 비관세지역 | | ▶ 특별행정구역수준 (자치단체조합) |
| 지정 권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
| 관리권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단형) | ▶ 해양수산부장관 (항만형) ▶ 국토교통부장관 (공항형) | ▶ 경제자유구역청 |
| 지정 지역 | ▶ 산단형 7개 :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울촌, 김제, 울산 | ▶ 항만형 5개 : 인천, 부산, 광양, 포항, 평택·당진 ▶ 공항형 1개 : 인천공항 | ▶ 6개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군산·새만금, 대구·경북 |
| 입주자격 | ▶ 외투기업·내국기업 ▶ 제조업 - 수출주목적 내국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물류업, 무역업 등 | | ▶ 외투기업 ▶ 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외국방송, 금융기관 등 |
| 조세 감면 요건 | ▶ 제조업 : 1천만\$이상 ▶ 물류업 : 5백만\$이상 | ▶ 제조업 : 1천만\$이상 ▶ 물류업 : 5백만\$이상 | ▶ 제조업 : 1천만\$이상 ▶ 관광업 : 1천만\$이상 ▶ 물류업 : 5백만\$이상 |
| 조세 감면 | ▶ 법인세, 소득세 : 5년 (3년100%, 2년50%) * 법인세율 : 1억이하 13%, 1억초과 25% ▶ 지방세 : 8~15년 | | ▶ 법인세, 소득세 : 5년 (3년100%, 2년50%) * 법인세율 : 1억이하 13%, 1억초과 25% ▶ 지방세 : 8~15년 |

| | | |
|-----------|---|---|
| 관세부과 | ▶ 관세유보(수입물품, 자본재) | ▶ 자본재 5년간 면제 |
| 임대료 | ▶ 부지가액 10/1,000수준 | ▶ 분양 (제도상 임대도 가능 : 부지가액 10/1,000수준) |
| 임대료 감면 | ▶ 고도기술 : 100% (1백만불이상) ▶ 일반제조 : 100% (1천만불 이상) | ▶ 감면율 미결정 (관리청이 결정) |
| 지원 분담 | ▶ 지정단계에서 부지 매입분담비율 결정 (국비 최대 75%) | ▶ 분담율 미결정 |
| 행정 지원 | ▶ 출장소 설치 - 관세·조세의 부과·징수, 출입국관리 - 우편·통신, 검역, 노무에 관한 사무 | ▶ 시도지사 직속 전담행정기구 설치 - 경제자유구역청 - 국가 위임 사무, 시도 사무 등 수행 |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2) 자유무역지역과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은 관세법에 의거하여 관세가 유보된 보세상태에서 외국물을 장치, 전시, 판매하거나 보세상태에서 외국물을 제조, 가공, 건설 등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허된 보세구역이다. 이 지역의 관리권자는 관세청장이며 전국 30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종합보세구역은 무역진흥 또는 물류촉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생산용 원자재를 보세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지역제도와 유사하나,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감면 등 세재상 지원을 포함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종합보세구역 입주업체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자유무역지역과 종합보세구역의 차이점은 다음의 <표 3-3>와 같다.

<표 3-3> 자유무역지역과 종합보세구역의 비교

| 구 분 | 자유무역지역 | 종합보세구역 |
|-------|--|--|
| 법적 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관세법 |
| 목 적 | 자유로운 제조·물류 및 무역활동 보장 → 외투유치, 무역진흥, 물류원활 | 2개 이상의 보세기능 수행 → 외투유치, 물류지원 |
| 위 치 | 산업·유통단지, 공항만지역(배후지)등 | 제한없음 |
| 지 정 | 지정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
| | 요청권자 |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
| | 지정절차 |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장 협의→지정 (운영시기 공고 : 관세청장 협의로 통제시설설치 후) |
| | 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단지), 국토해양부(공항만 및 배후지) |
| | 지정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단형 7개 :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울촌, 김제, 울산 ▶ 항만형 5개 : 인천, 부산, 광양, 포항, 평택·당진 ▶ 공항형 1개 : 인천공항 |
| | | 30개 지역 (산업단지 등 7개지역, 23개 개별업체) |

| | | | |
|------|----------|--|--|
| 운영방식 | 입주(설치) | 요건충족업체 요청→입주허가(관리권자) | 개별업체 설치·운영신고 |
| | 입주대상 | 제조·물류·도매업 및 지원업종 | 보관·제조·전시·건설·판매업 |
| | 수수료 | 없음(단, 관리권자에 임대료등 납부) | 없음 |
| | 운영기간 | 제한없음(임대기간: 최대 50년, 연장가능) | 제한없음 |
| | 장치기간 | 제한없음. 단, 관세청장 지정지역 3월 | 제한없음. 단, 관세청장 지정사업장 1년 범위내 장치기간 적용 |
| | 구역내 물품이동 | 입주업체간 이동 제한없음 (단, 자율적 또는 수출입시스템이용 반출입 기록) | 입주업체간 이동시 반출입신고 |
| 세제지원 | 역외작업 | 세관장에게 신고 | 세관장에게 신고 |
| | 관세면제 범위 | ▶ 과세보류상태 사용·소비 ▶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예정지: 시설재 관세면제) 원재료·윤활유·사무용컴퓨터·건축자재 | 원재료 과세보류상태 사용 |
| | 환급 등 범위 | 기계·기구·설비·장비와 그 부분품, 원재료· 윤활유·사무용컴퓨터·건축자재 | 수출용원재료, 수출물품 수리·보 수재, 보세판매물품 |
| | 부가세영세율 | 적용(수출하는 재화로 간주) | 비적용 |
| 시행일자 | 내국세 |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조특법 §121의2②, ④) -국세(법인세, 소득세): 5년간 감면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15년간 감면 | 해당 없음 |
| | | '70.1.1(수출자유지역)→'00.7.12(자유무역지역: 산단 형)→'00.3.28(관세자유지역: 물류형신설) ⇒ '04.6.23(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 | 1999.1.1(관세법 규정 신설), 2003.1.1(개별업체로 확대) |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4. 자유무역지역의 화물관리

이 절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서 화물관리의 내용과 행정절차에 대해서 다룬다. 그리고 이것이 보세구역과 경제자유구역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도 설명한다.

(1)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장치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업무나 수행방법에서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자유무역지역제도가 보세구역제도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자유무역지역법의 규정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의 반입·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유무역지역안의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법률에 따라 반출·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외국물품

외국물을 보관 또는 전시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반입(장치)하려면 세관장에게 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으로서 이를 적재한 선박·항공기에서 다른 선박·항공기로 이적하는 화물인 경우에는 입항적하목록을 제출한 경우 반입신고를 생략한다. 외국물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반출신고를 전자통관시스템²⁵⁾에 전자문서로 신고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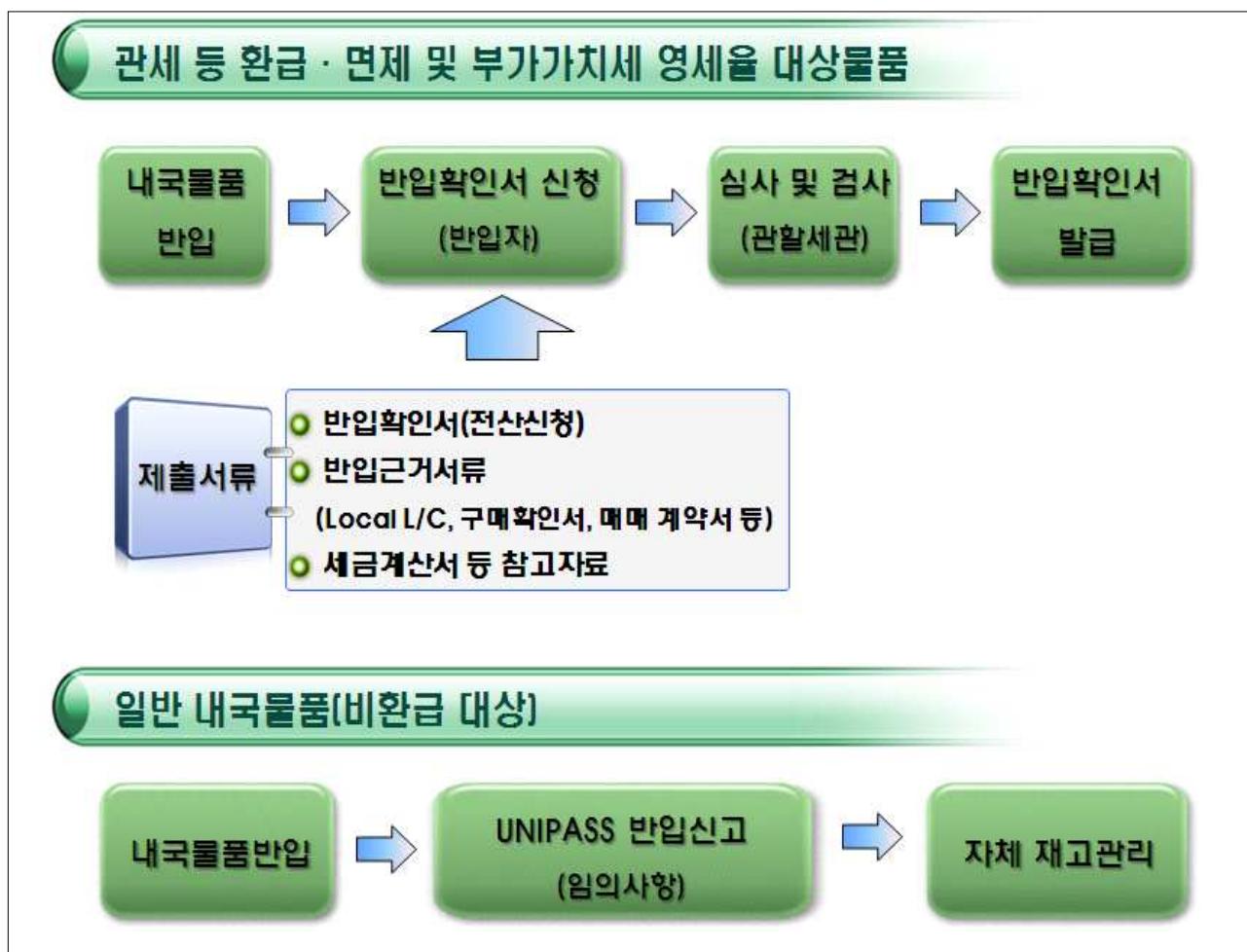
② 내국물품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내국물품 중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면 내국물품 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25) 물품의 수출입 신고, 세금 납부, 화물 검사 등 통관 절차를 인터넷으로 자동화해 세관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이 처리해주는 시스템이다.

제출하여야 한다.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면 내국물품확인서, 내국물품원재료사용승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3-1>은 내국물품 반입절차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환급대상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시 반입자는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반입확인서를 신청한다. 이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반입근거서류(Local L/C, 구매확인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참고자료이다. 이를 제출 받은 자유무역지역 관할지세관장 반입확인서를 발급한다. 자유무역지역내 반입한 내국물품이 비환급대상일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반입신고(임의사항) 후 자체적으로 재고관리를 하면 된다.



<그림3-1> 내국물품 반입절차 흐름도²⁶⁾

26) 자료: 부산본부세관, 『HOW TO 자유무역지역』, (부산본부세관, 2012) p.85.

③ 수입신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립·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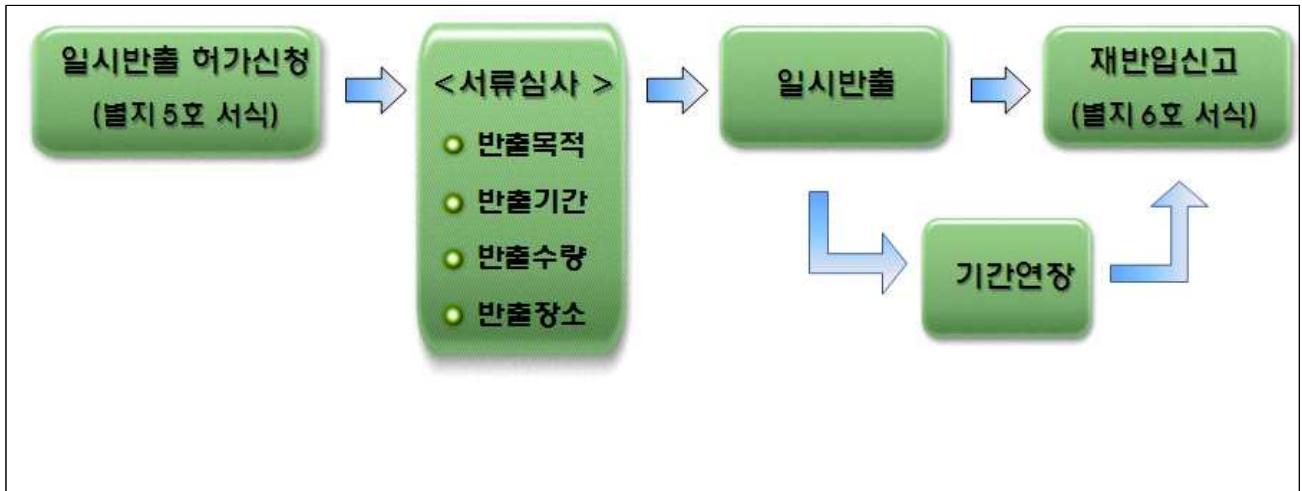
④ 수출신고

외국물품 등이 아닌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려면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서의 처리 및 선(기)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⑤ 외국물품의 일시반출입 허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등이 수리, 전시, 검사 또는 불가피한 포장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관세영역의 물품을 무상으로 수리하는 경우 (다만, 소모품 등 일시반출 후 재반입이 곤란한 물품은 제외) 관세영역으로 일시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림 3-2>은 일시 반출허가 업무 절차 흐름도를 나타낸다. 일시반출을 하고자하는 자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한다. 일시반출허가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반출목적, 반출기간, 반출수량, 반출장소를 심사한다. 세관장이 심사 후 반출허가를 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하여야 하며 반출목적을 고려하여 물품의 수량 및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반출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일시반출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에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일시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해당 물품을 재반입하고, 일시반출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재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림3-2> 일시반출허가 업무절차 흐름도

자료: 부산본부세관, 『HOW TO 자유무역지역』, (부산본부세관, 2012) p.118.

⑥ 역외작업

역외작업을 하려면 역외작업 수탁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역외작업 수탁업체의 소재지 약도 및 시설 배치도, 역외작업 계약서 사본, 역외작업에서 생기는 부산물 및 폐품의 내용, 수출주문서·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역외작업신고를 하면 된다.

⑦ 보세운송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다른 자유무역지역이나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려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나의 자유무역지역이 2개 이상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관 수출입화물시스템에 의한 반출입신고만으로도 보세운송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⑧ 보수작업

자유무역지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때에는 세관신고는 없이 장부 또는 자료보존 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산매체)에 기록관리 하면 된다.

⑨ 물품의 반출 및 장치기간에 대한 특례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장치기간은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관세청장이 정한 물류신속화 지역은 3개월의 장치기간이 적용된다. 장치기간이 적용되는 지역은 <표 3-4>와 같은데 부두 내 위치한 컨테이너 전용보세창고에는 3개월의 장치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보세화물 상태로 해당 자유무역지역에 3개월 이상 물건을 장치하게 되면 체화²⁷⁾되어 공매절차를 거치게 된다.

<표3-4> 자유무역지역 중 장치기간 적용 구역

| 공·항만 | 적용 지역 |
|------|---|
| 부산항 | 대한통운부산 컨테이너터미널, 부산 신항만터미널, 부산신항 국제터미널, 한진해운 신항만터미널, 부산신항 다목적터미널, 현대부산 신항만터미널, (주)비엔씨티 |
| 인천항 | 인천항 내항 제1부두 내지 제8부두, 남항컨테이너부두 |
| 인천공항 | 화물터미널 |

자료: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3

27) 체화란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말한다.

5. 보세구역의 화물관리

보세구역은 관세채권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유지를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해 준 구역을 말한다. 보세구역에서는 보세화물의 장치, 보수작업, 해체·절단 작업 등이 이루어진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된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된다. 종합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표 3-5>에서 보듯이 지정 장치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일시장치를 위한 장소로 세관장이 지정하며 장치기간은 6개월이지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하며 장치기간은 없다.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한다는 것에서 신청에 의해 운영되는 다른 보세구역과는 차이점이 있다.

특허보세구역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단기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을 장기간 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곳이며 장치기간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은 동일하게 1년이다. 예외적으로 정부비축물품이나 정부와의 계약 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 물품, 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만큼을 장치기간으로 한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 또는 내외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작업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곳이다.

보세전시장은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의 장치, 전시, 사용하는 구역으로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곳이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인 기계, 설비품, 공사용 장비를 장치,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으로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곳이다.

<표 3-5> 보세구역의 종류

| 종류 | | 의의 | 장치기간 |
|----|-------|--|--|
| 지정 | 지정장치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일시장치를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 | 6월내 (3월연장가능) |
| | 세관검사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검사를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 | 없음 |
| 특허 | 보세창고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단기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을 장기간 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곳 | -외국물품:1년내 -내국물품:1년내 -정부비축물품: 필요기간 |
| | 보세공장 | 외국물품 또는 내외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작업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곳 | 특허기간과 동일 |
| | 보세전시장 |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의 장치, 전시, 사용하는 구역으로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곳 | 특허기간과 동일 |
| | 보세건설장 |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인 기계, 설비품, 공사용 장비를 장치,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으로서 세관장이 특허를 받은 곳 | 특허기간과 동일 |
| | 보세판매장 |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이 사용할 물품을 판매하는 구역으로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곳 | 특허기간과 동일 |
| 종합 | | 보세상태에서 물품의 제조·보관·판매·전시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 | 종합보세구역의 운영기간 |

보세판매장은 보세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이 사용할 물품을 판매하는 구역으로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곳이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면세점이다.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를 제외한 보세공장, 전시장, 건설장, 판매장의 장치기간은 특허기간 만큼이다.

종합보세구역은 보세상태에서 물품의 제조·보관·판매·전시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보세화물의 장치기간은 종합보세구역의 운영기간이다. 즉, 종합보세구역의 운영기간동안은 별도의 장치기간 연장신청 없이 물건을 장치할 수 있는 것이다.

① 외국화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내국화물

보세구역에는 보세화물만을 장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내국물품을 장치하고자 하면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보세화물의 장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③ 보수작업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④ 해체·절단 작업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작업을 할 수 있다.

⑤ 장치물품의 폐기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으며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는 보세구역의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⑥ 견본품 반출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보세운송

외국물품은 개항, 보세구역, 세관관서(세관), 통관역, 통관장, 통관우체국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한 뒤 운송할 수 있다.

⑧ 장치기간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은 각 보세구역마다 다르다. 각 보세구역별 장치기간을 표로 정리해보았다.

<표3-6> 보세구역의 장치기간

| | | |
|------|--|--|
| 보세창고 | 외국물품 | 1년의 범위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
| | 내국물품 | 1년의 범위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연장 규정 X) |
| | 정부비축용물품, 방위산업용물품, 국제물류촉진물품 (LME·BWT)등 | 비축에 필요한 기간 |
| | 그밖의 특허보세구역 (공장·전시장·건설장·판매장) |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

<표 3-6>에서 보듯이 보세창고에서 외국물품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치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범위내에서 장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내국물품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은 1년이며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치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며 장치기간이 끝나면 보세창고 운영인의 책임으로 물건을 반출하여야 한다. 보세창고 외의 특허보세구역인 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으로 한다. 또한 정부비축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 물품, 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만큼 물건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물류신속화지역인 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 보세창고(자가용보세창고 제외), 부산항·인천항 부두내 컨테이너 전용보세창고, 부두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FS 포함)의 장치기간은 2개월이며 2개월 범위내에서 장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표 3-7>은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특허보세구역의 관리권자는 관세청장이지만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

는 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항만 및 배후지·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하지만 화물 등 실질적인 관리권자는 관세청장이다. 보세화물의 장치기간은 보세화물은 6개월, 정부비축물품, 정부비축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 물품, 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만큼이다. 규정한 장치기간이 경과하면 체화처리 되어 공매절차가 진행된다. 자유무역지역의 화물장치기간은 없지만 예외적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곳은 3개월의 장치기간이 적용되며 장치기간이 끝나면 체화되어 공매절차가 진행된다. 관세법에서는 물류신속화 특허보세구역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물품을 반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류신속화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허보세구역에는 보세사를 1명 이상 채용할 것을 의무로 하지만 자유무역지역에는 보세사 채용의무가 없다. 보수작업의 범위는 자유무역지역의 검품, 수선을 제외한 보존, 포장개선, 라벨링, 단순절단, 선별, 분류, 용기변경, 단순조립 및 이와 유사한 작업으로 특허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보수작업 범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절차상으로는 특허보세구역에서는 관할지 보세구역 세관장에게 보수작업 승인신청 및 완료보고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자유무역지역에서는 보수작업 내역에 대한 기록유지만 하면 된다.

내국물품관련해서는 특허보세구역에서는 장치 전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를 해야하며 1년의 장치기간을 적용받는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내국물품반입신고 의무는 없지만 관세등을 면제 또는 환급받고자하면 반입신고를 해야하며 내국물품확인서 · 세금계산서 등 반입사실 입증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반출목록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표 3-7> 특허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비교

| 구 분 | 특허보세구역 | 자유무역지역 |
|----------------------|---|--|
| 관리권자 | 관세청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공항만 및 배후지 : 국토교통부장관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국토교통부장관 ※ 화물 등 실질적 관리권자 : 관세청장 |
| 예정지역 | 절차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내(3년 연장가능) 지정가능 |
| 화 물 장치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화물 : 6월(6월 연장가) ▶ 비축물품, 국제물류 촉진물품 (LME, BWT) : 비축기간 ▶ 물류신속화보세구역 : 2월(2월 연장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장치기간 없음 ▶ 관세청장 지정 FTZ : 3월 ▶ 화주불분명, 부도·파산, 소재불명, 수취거절 등의 경우 : 6월 |
|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신속화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수리된 물품 : 15일내 반출의무(위반시 과태료 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신속화보세구역으로 지정된 FTZ : 15일내 반출의무(위반시 과태료 부과) |
| 체화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절차에 따라 체화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체화 미발생 ▶ 예외 : 관세청장 지정FTZ 및 화주불명 등 특이사유 발생시 체화 발생 |
| 보세사 채용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인이 보세사이거나, 보세사를 1명 이상 관리자로 채용해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의무 없음 |
| 보수작업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 포장개선, 라벨링, 단순절단, 선별, 분류, 용기변경, 단순조립 및 이와 유사한 작업(현상유지 수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 선별, 분류, 용기변경, 포장, 상표부착, 단순조립, <u>검품</u>, <u>수선</u>(단, 원산지허위표시, 지적재산권침해 행위 제외) |
| 보수작업 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전 : 보수작업승인신청 ▶ 작업후 : 보수작업완료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작업승인 및 완료보고 절차를 생략하며, 입주기업체 자율로 작업 → 원산지표시시정작업 등 일부 작업 |

| | | |
|--------------|--|---|
| | | 의 경우 승인 및 완료보고의무 부여 |
| 내국물품 반입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치전 세관장에게 반입신고의무 ▶ 1년 이상 장치불허(원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물품 반입신고의무 없으며, 필요시 반입신고 가능 |
| 내국물품 반출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출신고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물품확인서 · 세금계산서 등 반입사실 입증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반출목록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 |

자료: 부산본부세관, 『HOW TO 자유무역지역』, (부산본부세관, 2012) p.14.

제2절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1. 자유무역지역 지정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이 요청된 지역의 설정과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표 3-8>과 같다.

<표3-8> 기본계획 작성시 포함해야 할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1. 자유무역지역의 명칭·위치·경계 및 면적과 위치도
2.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개발 기간 및 방법
3.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목표 및 방향, 입주대상 업종, 입주 우선순위, 입주업체 선정기준, 입주업체의 유치계획 및 배치계획(도면을 포함한다) 등이 포함된 입주 관리계획
4. 토지이용계획, 주요 지원시설 배치계획(도면을 포함한다) 및 도로·항만·용수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계획
5. 지정에 따른 추정 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6. 외국인투자·무역·국제물류·지역개발 및 고용증진의 전망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분석
7. 해당 지역에 있는 시설의 현황과 화물 처리능력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細目)
9. 해당 지역에 있는 기존 입주업체의 현황과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대책
10.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관련 검토자료
11. 출입구, 울타리 등 통제시설의 설치계획

2. 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이다. 이 지역들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물품의 반입·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 중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적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표 3-9>에서 보듯이 자유무역지역 유형별로 지역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공항 및 항만과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항의 지역적 요건으로는 연간 30만톤의 화물을 처리와 국제 항로의 개설여부 배후지와의 접근성을 강조한다.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은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처리와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 선박 항로의 개설여부, 항만과의 접근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항만은 연간 1천만톤의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출 것과 50만제곱미터의 면적을 요건으로 한다. 통제시설과 세관검사장은 공통적인 요건이 적용된다.

<표3-9> 자유무역지역의 지역적 요건

| 구분 | 기준 |
|------------------------|--|
| 산업단지 |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을 국외의 반출·반입하기 쉬운 지역일 것 |
| 공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연간 3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나. 물류터미널 등 항공화물의 보관, 전시, 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공항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공항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공항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
| 물류단지 및 물류 터미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 선박 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나.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 다.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육상구역의 면적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항만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만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항만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
| 항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반입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고,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량의 100분의 20 이상이 국외로 반출되거나 반출될 것으로 예상될 것 다. 물류단지 또는 물류터미널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 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또는 그 밖에 외국물품의 불법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나. 반입물품 및 반출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장(検査場)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현황

1970년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후 2000년대 이후로 자유무역지역이 꾸준히 확대되었다. 2020년 6월 기준 산업단지형, 항만형, 공항형 등 3가지 형태의 13개 자유무역 지역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산업단지형은 7개로 70년3월 최초로 지정된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하여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자유무역지역이 있으며 면적은 울산 자유무역지역이 제일 넓지만 입주기업체는 114개로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제일 많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는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이 있으며 부산항은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자유무역지역 중 제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공항형에는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이 있다.

<표 3-10>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 구분 | 명칭 | 지정시기 | 면적(천 m ²) | 입주업체 |
|--------------|------------------|--------|-----------------------|------|
| 산업단지형 (7) | 마산 자유무역지역 | 70년03월 | 957 | 114 |
| | 군산 자유무역지역 | 00년10월 | 1,256 | 32 |
| | 대불 자유무역지역 | 02년11월 | 1,157 | 37 |
| | 동해 자유무역지역 | 05년12월 | 248 | 16 |
| | 율촌 자유무역지역 | 05년12월 | 343 | 17 |
| | 울산 자유무역지역 | 08년12월 | 1,297 | 34 |
| | 김제 자유무역지역 | 08년12월 | 992 | 31 |
| 항만형(5) |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 02년1월 | 9,364 | 68 |
| |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 02년01월 | 8,880 | 1 |
| |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 03년01월 | 1,964 | 15 |
| | 포항항 자유무역지역 | 08년12월 | 840 | 41 |
| |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 09년03월 | 1,492 | 308 |
| 공항형(1)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 05년04월 | 3,050 | 3 |

자료 : 관세청 내부자료

제4장 자유무역지역의 개선방안

제1절 자유무역지역의 문제점

이 절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 복합물류업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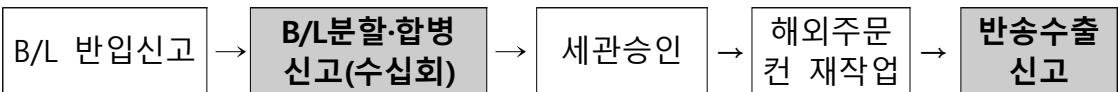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국제운송주선·국제선박거래, 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하는 복합물류사업의 경우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을 사용 또는 소비할 목적으로 반입하려면 사용소비신고를 해야 한다. 사용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세관의 화물관리가 종결되고 입주업체가 자체적으로 재고관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세관 반·출입 신고 절차가 매우 간소화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매우 간편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은 사용소비신고 업무절차이다.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을 하게 되면 해당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반입신고는 B/L단위로 하게 된다. 복합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유무역지역이라도 입고된 화물이 사용소비신고 비대상 화물일 경우 화물특성에 따라 물품을 장치해 놓고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주문량만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B/L분할 후 컨테이너 적입 작업후 반송수출신고를 해야한다. 사용소비신고 비대상 물품일 경우 모델·규격에 따라 수십 회 B/L 분할·합병 신고를 해야하고 화물관리번호별로 재고관리를 해야하기에 재고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반면 사용소비신고 대상이 되면 외국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이 될 때 B/L단위로 반입신고 후 1회의 사용소비신고 후 해외주문량만큼 컨테이너 적입 작업을 하여 국외반출신고를 하면 된다. 이 경우 수십 번의 B/L 분할이 아니라 B/L 전체 수량에 대해 1호의 사용소비신고만 하면 되고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재고관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업무절차가 훨씬 간소화 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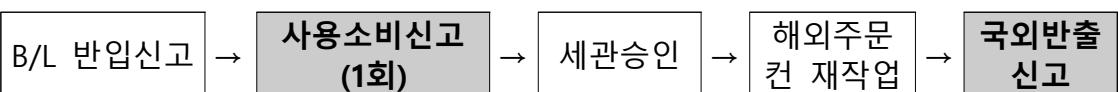
• 복합물류사업의 사용소비신고 비대상



⇒ [세관절차 복잡] 모델·규격에 따라 수십 회 B/L분할 · 합병 신고

⇒ [재고관리 곤란] 화물관리번호별 재고관리 복잡

• 복합물류사업의 사용소비신고 대상



⇒ [세관절차 간소] B/L전체 수량에 대한 단 1회 사용소비신고 가능

⇒ [재고관리 용이] 개별품목(단위별) 자체 재고관리

<그림4-1>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사용소비신고 업무절차흐름도

사용소비신고 대상 물품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장치되는 화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모델·규격을 가진 화물의 경우, 사용소비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세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의 특성에 상관없이 사용소비신고대상의 범위를 사용·소비로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서 자유무역지역 도입 취지와는 달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은 복합물류업의 사용소비신고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은 한일관계 악화 및 경기침체 영향으로 화물물동량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H사 또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물류 유치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해외 타이어 업체는 동북아 물류기지사업으로 자동차용 타이어를 일본으로 부

터 수입하여 부산항 H사에 보관, 규격별로 분류 후 주문이 들어오면 재적입하여 유럽(독일)으로 수출하고자 하였다. 70여종의 모델·규격을 가진 품목(타이어)의 특성상 잣은 B/L분할·합병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세관절차로 인해 사업계약이 무산될 뻔했다.

해외 타이어업체는 유럽수출 물류기지 역할로서 부산항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항만의 업체도 해외파트너로 고려하고 있었고, 기업 간 계약조건 뿐만 아니라 편리한 세관행정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부산세관에서는 기업애로사항의 문제해결을 위해 부서 내 물류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자유무역지역의 세관절차와 재고관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복합물류업에 적용하는 사용소비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법령과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부서 내 물류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다. 수차례 업무토론회를 거쳐 자유무역지역법 취지에 맞게 법규를 적극 해석하여 타이어 보관·분류·컨테이너 재적입 작업을 복합물류작업으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H사에서는 약250억원의 국제물류를 유치하였고 CCTV 증설, 지게차 구입 등 약 2억원의 신규투자 및 2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가 복합물류업을 영위하여 사용소비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소비신고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서 자유무역지역 도입 취지와는 달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제한이 될 수도 있다.

4.1.2 업종코드 변경 시 심사 절차 복잡

세관장이 관리하는 모든 보세구역에는 장치장소부호가 부여된다. 자유무역지역도 실질적인 화물관리권자는 세관장이기 때문에 보세구역과 같이 장치장소부호가 부여된다. 장치장소를 나타내는 부호는 총 8자리인데 <그림 4-2>에서 보

듯이 첫 번째~ 세 번째 자리에는 무역통계부호표에 의해 세관고유번호가 부여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는 자유무역지역 업종별 교유부호가 부여된다. 여섯 번째~ 여덟 번째에는 세관별 업종별 일련번호가 부여되고 이는 전자시스템에서 순차적으로 자동 부여된다.

| 부산신항국제터미널 | | | | | | | |
|-----------|---------|---------|---------|----------|----------|----------|----------|
| 0 | 3 | 0 | 7 | 7 | 0 | 1 | 3 |
| 첫 번째 자리 | 두 번째 자리 | 세 번째 자리 | 네 번째 자리 | 다섯 번째 자리 | 여섯 번째 자리 | 일곱 번째 자리 | 여덟 번째 자리 |

*030(부산세관) + 77(보관업)+ 013자동부여

<그림4-2> 관리부호 부여 요령

<표 4-1>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업종별 고유번호

| 코드 | 코드명 | 코드 | 코드명 |
|----|------------------|----|-----------------|
| 01 | 세관검사장 | 31 | 보세전시장 |
| 02 | 지정장치장 | 41 | 자유무역지역(제조업) |
| 03 | 컨테이너전용장치장 | 42 | 역외작업장 |
| 06 | 영업용보세창고 | 46 | 본(부)선통관 |
| 07 | 자가용보세창고 | 47 | 입항전수입신고 |
| 08 | 복합물류보세창고 | 48 | 본(부)선이적 |
| 10 | 영업용보세창고 | 49 | 휴대품원격지통관 |
| 11 | 영업용보세창고 | 51 | 통관우체국 |
| 12 |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 | 56 | 미8군불하장 |
| 13 | 자가용보세창고 | 60 | 부두직통관 |
| 14 | 보세공장전용보세창고 | 70 | 종합보세구역 |
| 15 | 보세공장외장치 | 71 | 종합보세구역(복합물류) |
| 16 | 수출용보세공장 | 75 | 자유무역지역(도매/수출입업) |
| 17 | 내수용보세공장 | 76 | 자유무역지역(하역/운송업) |
| 18 | 수출/내수겸용보세공장 | 77 | 자유무역지역(보관업) |
| 19 | 보세공장장외작업장 | 78 | 자유무역지역(복합물류업) |
| 20 | 보세공장장외작업장 | 79 | 자유무역지역(기타) |
| 21 | 출국장면세점 | 80 | 자유무역지역(배송센터) |
| 22 | 시내면세점 | 84 | CFS장치장 |
| 23 | 외교관면세점 | 86 | CFS장치장 |
| 24 | 지정면세점(제주) | 88 | 공동보세구역 |
| 25 | 입국장면세점 | 90 | 검역소구내계류장 |
| 26 | 보세건설장 | 99 | 보세구역 외 장치 |
| 27 | 중소기업형(FTA형) 보세공장 | | |

<표 4-1>에서 보듯이 자유무역지역 단순보관업은 77코드이다. 업체가 복합물류 화물유치를 위해 업종코드를 77코드에서 78코드 변경 시 재심사를하게 된다. 재심사를 위한 서류준비, 시설요건, 현장점검 등으로 인해 기간이 소요되어 물류유치 계약 시기를 놓치게 되거나 협상에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수 있

다.

3. 관세법과 비교시 과중한 처벌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관의 관계)를 보면 자유무역지역에서는 해당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별칙에서도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자유무역지역법과 관세법 각각 다르다.

보수작업을 예로 들어보면 관세법에서는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자유무역지역법에서는 보수작업의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하도록 되어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특허보세구역), 보수작업내용 기록관리 의무 위반시(자유무역지역) 처벌 규정은 상이하다.

관세법에서는 보수작업 승인 의무 위반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1차 적발 50만원, 2차적발시 100만원, 3차적발시 200만원)를 부과한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역법에서는 보수작업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관세법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비해 과중하다고 할 수 있다.

관세법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처벌로 인해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화주입장에서는 화물을 보세구역에 장치하느냐 자유무역지역에 장치하느냐에 따라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

4. 최신 자유무역지역 업무지침서 부재

부산세관에서는 2010년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국제화물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업무지침서인 「HOW TO 자유무역지역」을 발간했다. 그 후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되고 새로운 물류 유형이 생겨나는 등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인해 기존의 「HOW TO 자유무역지역」을 개정하여 2012년에 「HOW TO 자유무역지역」 2012년 개정판을 새

로 발간하였다.

자유무역지역은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과 비교하면 화물관리 및 여러 가지측면에서 차이점이 있고 확인해야 할 법규정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업무지침서가 입주기업체 및 세관공무원에게도 꼭 필요한 실정이다. 2012년 개정판 발간 이후 8년 동안 9번의 법 개정과 6번의 고시 개정이 있었지만 기존의 자유무역지역 업무지침서인 「HOW TO 자유무역지역」의 개정은 전무했다. 노후화 된 업무지침서로 인해 입주기업체 및 업무를 처리하는 세관공무원은 업무이해 부족으로 자유무역지역관련 업무처리에 혼선을 빚을 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제2절 자유무역지역의 개선방안

자유무역지역의 문제점인 복합물류업의 한계점, 업종코드 변경시 복잡한 절차, 관세법과 비교 시 과중한 처벌규정 적용, 최신 자유무역지역 업무지침서 부재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지역법 복합물류사업 범위 해석 범위 확대

자유무역지역에서는 복합물류사업의 경우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을 사용 또는 소비할 목적으로 반입시 사용소비신고를 한다. 사용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세관의 화물관리가 종결되고 입주업체가 자체적으로 재고관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세관 반·출입 신고 절차가 매우 간소화 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간편한 제도인데 이 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국제물류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사용소비신고 대상물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

4.1.1의 사례에서 보듯이 화물관리번호별 재고관리가 어려운 多품목 및 잣은 B/L분할·합병 물품에 대해 사용소비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적극 허용해준다.

2. 업종코드 변경시 심사 절차 완화

단순보관업(77)의 업체가 복합물류 화물유치를 위해 업종코드를 복합물류업(78)을 변경할 경우 기존의 재심사절차를 완화해야 한다. 신규·현입주기업의 코드 심사 시 기존의 재심사를 위한 서류준비, 시설요건, 현장점검 등의 확인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업계획서와 재고 관리시스템 운영 여부 확인만으로 복합물류업종(78) 코드를 신속하게 부여한다. 시설장비 및 보관장소 구분 여부 심사는 실제 사용소비신고대상 화물의 반입 시점 또는 수시·정기점검을 통해 현장 확인을 하면 된다.

3. 자유무역지역법의 벌칙규정 관세법과 일원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관의 관계)의 벌칙조항을 보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관세법과 비교했을 시 자유무역지역법이 더 과중하다. 따라서 관세법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처벌로 인해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화주입장에서는 화물을 보세구역에 장치하느냐 자유무역지역에 장치하느냐에 따라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

벌칙조항은 관세법 수준으로 완화시키거나 관세법으로 단일화하고 자유무역지역과 관계된 벌칙만 자유무역지역법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법령 일원화 및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줘야 한다.

4. 자유무역지역 신가이드 북 제작

2012년 개정·발간된 「HOW TO 자유무역지역」을 개정된 법규정, 새로운 형태의 물류 유형 등 국제물류 변화에 보완된 제도 등을 수정·추가하여 최신 자유무역지역 업무지침서를 제작하여야 한다.

입주기업, 지원기관 등의 담당자가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주부터 준비사항, 유의사항, 화물관리 제도 전반에 대해 기술하여 누구든지 알기 쉽게 자유무역지역 종합실무 가이드 북이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입주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에게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입주기업체에게는 자유무역지역제도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자유무역지역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세관 담당자에게는 업무이해도를 높여 줄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유무역 국제물류 유통 지원 및 민·관 업무 처리 원활화에 기여할 것이다.

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정의를 알아보고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한 제도인 경제자유구역, 종합보세구역과 비교하였다. 자유무역지역의 화물관리 측면에서는 보세구역과의 비교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의 특성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았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절차 및 지정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자유무역지역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또한 자유무역론의 대표적인 이론인 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 보호무역론의 대표 대표이론인 유치산업보호론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관세의 경제적 효과 및 퀘터의 경제적효과에 대해서도 그래프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이론적 도입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연구해보았다.

첫째, 복합물류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복합물류사업의 사용소비신고 대상에 대한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사용소비신고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국제 물류사업을 유치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둘째, 단순보관업(77)의 업체가 복합물류 화물유치를 위해 업종코드를 복합물류업(78)변경 할 경우 기존의 재심사 절차를 완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심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물류유치 계약 시기를 놓치게 되거나 협상에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셋째, 자유무역지역의 벌칙규정을 관세법으로 일원화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관세법에 비해 자유무역지역법이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화주들이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을 장치하는데 있어서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넷째, 자유무역지역 최신 가이드북을 제작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자유무

역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입주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에게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입주기업체의 자유무역지역 제도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자유무역지역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세관담당자에게는 업무이해도를 높여 자유무역 국제물류 유치 지원 및 민·관 업무처리 원활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국내 자유무역지역의 관세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다양한 이름과 정책으로 자유무역지역이 운영되고 있고 관세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업무와 연결되어 있다. 향후에는 국외의 자유무역지역과 국내 자유무역지역을 비교하여 국내 자유무역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해내고 관세행정의 측면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경윤범,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국내 반입시 관세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관세학회지』, 제17권 제1호, 2016, pp.135-153.
- 관세청, 2020년도 관세법령집, 2020.
- 김동룡, 신용준, 「FTA 확대에 따른 마산자유무역지역 운영 및 물품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5권 제4호, 2010, pp.275-299.
- 맹철규, 남금천, 김진섭, 「관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유무역지역(FTZ) 제도 개선방안 연구」, 『관세학회지』, 2018, pp.149-168.
- 부산본부세관, 「HOW TO 자유무역지역」, 부산본부세관, 2012.
- 윤상렬, 「자유무역지역내 효율적 화물관리 및 신물류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8.
- 이윤, 장광홍, 안영효, 「한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효율성분석」, 『물류학회지』, 제30 권 20호, 2020, pp.13-22.
- 장근호, 「자유무역지역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 제14-1집, 2014, pp.149-182.
- 산업연구원,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산업통상자원부, 2007.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유무역지역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 조지성·김은수·이언경·김동환·김엄지,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 개선을 통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FTZ) 활성화 방안」, 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물류협회, 보세관계법규집, 2020.

<인터넷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kita.net>